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9년 4월 18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19년 4월 8일

나. 제안자: 이종숙 의원 외 16명

다. 회부일자: 2019년 4월 16일

라. 상정일자: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19. 4. 18.)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이종숙 의원)

가. 제안이유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2)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제5조)
- 3) 지원사업(안 제6조)
- 4) 지원의 중지(안 제7조)
- 5) 환수조치(안 제8조)
- 6)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9조)
- 7) 예산확보(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19. 4. 8. ~ 4. 15.) 결과: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한진)

가. 개정 취지

이 조례안은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1) 이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2)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정함
- 3) 안 제3조에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 4)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5)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 6)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지원의 중지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 7) 안 제9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8)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 예산확보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종합의견

- 1) 이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에서 규정한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조례임.
- 2)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시비사업으로 아동교육비·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에는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3) 국가에서는 2002년 12월 18일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2007년 10월 17일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확대 강화하고 있음.
- 4) 이 조례안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한부모가족이 사회적·경제적·심리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족기능의 유지와 안정된 삶을 회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5) 또한, 이 제정조례안의 입법내용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이 적법하게 제출된 조례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판결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1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 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돋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